

|           |                    |
|-----------|--------------------|
| 의안번호      | 제 793 호            |
| 의결<br>연월일 | 2018. . .<br>(제 회) |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              |
|-------|--------------|
| 발의자   | 이양섭 의원 등 6명  |
| 발의연월일 | 2018년 3월 14일 |

#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양섭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793 |
|----------|-----|

제출연월일 : 2018년 3월 14일

제 출 자 : 이양섭, 김영주, 박우양,  
박종규, 윤은희, 이언구

## 1. 제정이유

-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령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가.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안 제2조)
- 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규정 (안 제5조)
- 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도민 대상 홍보활동 규정 (안 제6조)
- 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업무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 위탁 규정(안 제7조)
- 마.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노력 규정 (안 제10조)

## 3. 의안전문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18 - 19 호
- 다. 협의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라. 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붙임

##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이하 “웰다잉 문화조성” 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인식조사)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4.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
  5.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6.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사업
  7.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8.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홍보)**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호스피스의 날)** 도지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취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 2.~ 8. (생략)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1호

### ○ 사 유

-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 작성자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김 낙 주